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26일, 이양수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27.)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양수 의원)

현행법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건으로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되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복지전문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및 행정

처분 요건의 개선·보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산림복지전문업과 달리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스로 등록취소를 원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곧바로 등록취소를 할 근거가 없어,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은 시설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처로 활용되어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도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환경을 제고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처에 대한 이용권자의 신뢰를 향상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산림복지전문업의 행정처분 요건 보완 및 휴업·폐업 신고 제도 도입

현행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및 취소제도는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이후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의 변동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재하고, 일정 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자격요건 미충족 및 운영 중단 업체가 계속하여 등록업체로 관리되고 산림복지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

으므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개정안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와 관련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림청도 개정안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고, 3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②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③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 협의나 지역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거치거나,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수립 중 지구지정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구지정 변경,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모두 거쳐야 하는 등 사업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현행 3단계 인·허가 절차를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2단계 절차로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줄이고 산림복지공간 조성기간 단축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안 제3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계획 수립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조성계획 제출 및 지구지정 신청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산림청장의 지구지정과 사업시행자의 조성계획 간 연계규정이 미비하므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절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있으나, 타당성조사 제도는 제34조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바, 동 제도가 유지되는 한 타당성조사 제출 절차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

현행법은 제55조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으로 기부금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제1항),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라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

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진흥원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산림청장의 업무 감독과 예산 승인을 받는 기관으로서,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할 수는 없으나 현행법에 접수 근거 마련 시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하여 사업 운영에 충당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진흥원이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진흥원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부금품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탁의 자발성과 기·수탁자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품금품 접수 절차·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산림청은 행정안전부의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임.

참고로, 산림청 산하 유사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경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3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유사입법례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조성계획 제출 및 지구지정 신청 절차 등 산림청장의 지구지정과 사업시행자의 조성계획 간 연계규정이 미비하므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 절차 규정을 보완함.
- 개정안은 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있으나 타당성조사 제도는 제34조에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포함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함.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 시, 기탁의 자발성과 기·수탁자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조성계획 제출 및 지구지정 신청 절차 등 산림청장의 지구지정과 사업시행자의 조성계획 간 연계규정이 미비하므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절차 규정을 보완하고, 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있으나 타당성조사 제도는 제34조에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포함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 시, 기탁의 자발성과 기·수탁자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7조제1항·제5항 및 제33조제1항, 안 제55조의2제2항 신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7조제1항 중 “산림복지서비스에”를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림복지서비스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변경에”를 “지정 신청, 지정 및 변경에”로 한다.

안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시 다음”으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안 제5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u>산림복지서비스</u> 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u>고려하여</u>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 ----- ----- ----- ----- ----- <u>고려하여</u> ----- ----- -----.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 ----- <u>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림복지서비스에</u> ----- ----- ----- ----- ----- ----- -----.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협의하여야</u>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u>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u> ----- -----.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③ 산림청장이 산림
복지지구를 지정 또
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산림청장은 산림
복지지구를 지정하
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시하여야 한
다.

1. 산림복지지구의
위치·면적
2. (생 략)
3.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 -----

-----.

1. ----- 명
칭·위치·면적
2. (현행과 같음)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u><신 설></u> ⑤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	4. 제33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u><삭 제></u> ① 사업시행자가 산	⑤ ----- 지정 신청, 지정 및 변경에----- -----.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개정안과 같음) ① -----
--	---	--

<u>음</u> 각 호의 사항이 <u>포함되어야</u> 한다.	<u>림복지단지를 조성</u> <u>하고자 하는 경우</u>-- ----- <u>포함된 산</u> <u>림복지단지 조성계</u> <u>획(이하 “조성계획”</u> <u>이라 한다)을 수립</u> <u>하여야</u> ---.	----- -----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지구 의 지정 신청 시 다음----- ----- ----- -----수립하 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1. ~ 5. (생략) 6.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u>산림청장은 조성</u> <u>계획을 승인하고자</u> <u>하는 때에는 관계</u> <u>행정기관의 장과 협</u> <u>의한 후 위원회의</u> <u>심의를 거쳐야</u> 한 <u>다.</u>	1. ~ 6. (현행과 같 음) <신설> <삭제>	1. ~ 5. (현행과 같 음) 6.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7. (현행 제6호와 같 음) (개정안과 같음)

④ <u>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u>	<u><삭 제></u>	(개정안과 같음)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u>수립·승인</u>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② ----- -- <u>수립</u> ----- ----- ----- -----.	②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u>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u> <u>진홍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u>	<u>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u> (개정안과 같음)

	<u>법률」 제5조제2항</u> <u>각 호 외의 부분</u> <u>본문에도 불구하고</u> <u>자발적으로 기탁되</u> <u>는 기부금품을 사</u> <u>업목적에 부합하는</u> <u>범위에서 접수할</u> <u>수 있다.</u> <u><신 설></u> ② <u>진흥원은 제1항</u> <u>에 따라 접수한 기</u> <u>부금품을 별도계정</u> <u>으로 관리하여야</u> <u>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u> <u>기부금품의 접수절</u> <u>차·방법 및 사용</u> <u>등에 필요한 사항</u> <u>은 대통령령으로</u> <u>정한다.</u> ③ (개정안 제2항 과 같음)
--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지정 및 지정해제”를 “지정, 변경 및 지정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을 “산림복지단지”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한다.

3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8.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

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2.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3.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4. 폐업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등을 신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산림복지전문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27조제1항 중 “산림복지서비스”를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림복지서비스”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4항제1호 중 “위치·면적”을 “명칭·위치·면적”으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4. 제33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 제33조제1항”을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으로, “조성계획”을 “실시계획”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계획에는 다음”을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시 다음”으로, “포함되어야”를 “포함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의 제5항) 중 “수립·승인”을 “수립”으로 한다.

6.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제37조제1항제30호 중 “제3항까지”를 “제3항까지 및 제19조”로, “지정”

을 “지정 및 지정해제”로 한다.

제42조제5항 중 “제27조제5항”을 각각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호 중 “취소”를 “취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2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제6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
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복지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2. (생략) 3. 산림복지지구 <u>지정 및 지정해제</u> 4. <u>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u> 5. · 6. (생략) ② ~ ⑦ (생략)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산림복지지구 <u>지정, 변경 및 지정해제</u> 4. <u>산림복지단지</u> ----- -----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① ----- ----- ----- ----- -----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신설>

4. ~ 7.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

-----.

1. · 2. (현행과 같음)

3. -----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 7. (현행과 같음)

8.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
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
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
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
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
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
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
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생략)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3. 4. (생략)

<신설>

사유로 -----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①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4. (현행과 같음)

5.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
소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
유로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2조의3(산림복지전문업의 휴
업·폐업 등의 신고) ① 산림복
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
업을 신고한 경우 제21조제1항
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
다.

1.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
는 경우

2.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3.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4. 폐업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u>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u> ③ <u>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등을 신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산림복지전문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u>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u>산림복지서비스</u> 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u>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① ----- <u>산림복지단지</u> <u>를 조성하려는 자가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림복지서비스</u> ----- ----- ----- <u>고려하여</u> ----- ----- -----.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② -----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위치·면적
 2. (생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설>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1. -----명칭·위치·면적
2. (현행과 같음)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4. 제33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일 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2. (생략)

② (생략)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① -----

-----.

1. -----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실시계획-----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삭제>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시 다음-----포함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1. ~ 5. (현행과 같음)

6.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결과

7. (현행 제6호와 같음)

<삭제>

<삭제>

수 있다.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
가등의 의제)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
·협의·해제 등(이하 “인·허
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9. (생략)

3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
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
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
가

② -----수립-----

-----.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
가등의 의제) ① -----

-----.

1. ~ 29. (현행과 같음)

30. -----제3항

-----까지 및 제19조-----

-----지정 및 지정해제-----

② ~ ④ (생략)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생략)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7조제3항-----

-----제

27조 제3항-----

ⓒ (책채키 가오)

155쪽의 2(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홍워은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

	<u>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u>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u>취소</u> 2. <u>삭 제</u>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u>취소</u> 4. (생 략) 5. <u>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성계</u>	제59조(청문) ----- ----- ----- -----. 1. ----- -----<u>취소</u>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 -----<u>취소(제2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u>획 승인의 취소</u> 6. (생 략) 제6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u>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u> 5. · 6. (생 략) 제64조(벌칙)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u><신 설></u> <u>2. ~ 6. (생 략)</u> 제6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6. (현행과 같음) 제60조(수수료) ----- -----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 6. (현행과 같음) 제64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u>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